

##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관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9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5. 17.

발의자 : 윤관석 · 김해영 · 이상현

김영호 · 유동수 · 임종성

박찬대 · 신창현 · 안호영

김철민 · 서형수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주차장 공급 확대와 더불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차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법적근거 미비로 데이터 수집·관리 및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.

이에 따라 현재 시범운영 중인 주차장 정보망 구축·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·제공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한편, 이를民間에 개방하여 주차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4 신설).

##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4(주차장 정보망 구축 · 운영) ① 국토교통부장관,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 · 운영할 수 있다.

### 1. 다음 각 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관한 사항

가.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나. 제8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

다.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

### 2. 다음 각 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

가. 제12조,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

나.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

### 3. 다음 각 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

- 가.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
  - 나.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주차장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
- ② 국토교통부장관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1. 제7조에 따른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  - 2.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
  - 3. 제19조에 따른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에 관한 업무를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제21조의4(주차장 정보망 구축 · 운영) ① 국토교통부장관,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 ·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1. 다음 각 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제8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다.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</p> <p>2. 다음 각 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제12조,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</p>

나.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 
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주  
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

3. 다음 각 목에 따른 부설주차  
장에 관한 사항

가.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

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

나.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 
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  
차요금 징수 및 용도변경  
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주차장과 관련되는  
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 
정하는 정보

② 국토교통부장관, 특별자치시  
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  
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관한  
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 
각 호의 자에게 주차장 운영과  
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  
며,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 
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  
라야 한다.

1. 제7조에 따른 특별시장·광역  
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
2.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을

설치한 자

3. 제19조에 따른 주차수요를  
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 
설치하려는 자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 
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·운  
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  
집에 관한 업무를 「한국교통안  
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  
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  
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  
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차  
장 정보망의 구축·운영에 필요  
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 
한다.